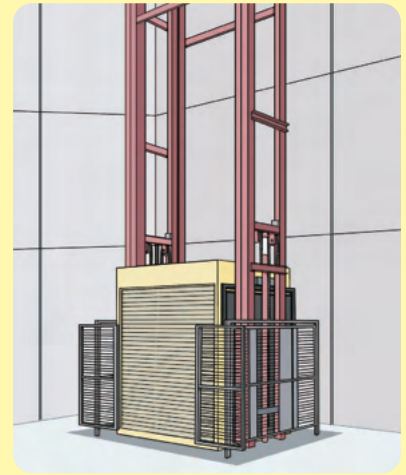




최근 5년간('18~'22) 추락·끼임 사망자 35명
“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”
 (적재하중 0.5톤미만)

2024. 3. 2.~2024. 9. 2.까지
적재하중 0.5톤미만
산업용리프트
안전검사 받으세요!



✓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!!

산업용리프트란?

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

※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초 바닥면에 고정 설치된 기계

적재하중 0.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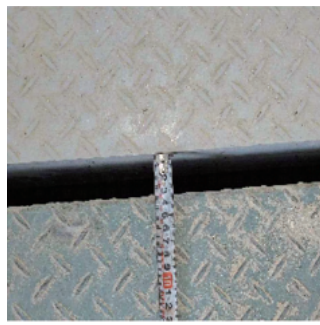
사전컨설팅	안전검사
신청기간 2023. 9. 1. ~ 2024. 3. 1.	최초검사기간 2024. 3. 2. ~ 9. 2.
신청방법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http://miis.kosha.or.kr 신청 · 대 한 산 업 안 전 협 회 02-851-6452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55-751-0823 · 한 국 안 전 기 술 협 회 1577-7514 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-3089	
내용 안전검사기관이 유선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및 검사신청 방법과 검사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 안내	주요검사항목 · 승강로, 운반구, 권상기 등 기계장치 · 낙하방지장치(3중),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
혜택 안전검사 불합격 시 개선을 조건으로 행정처분(사용중지 등) 유예,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용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교체시 비용 70%지원 연계	검사주기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 마다

✓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(과태료 1천만원 이하)을 받을 수 있으니 2024. 9. 2.까지 안전검사를 받고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주요 검사항목



① 화물반입구 및 방호울
(높이 1.8m 이상)



② 운반구와 승강로의 간격
(35mm 이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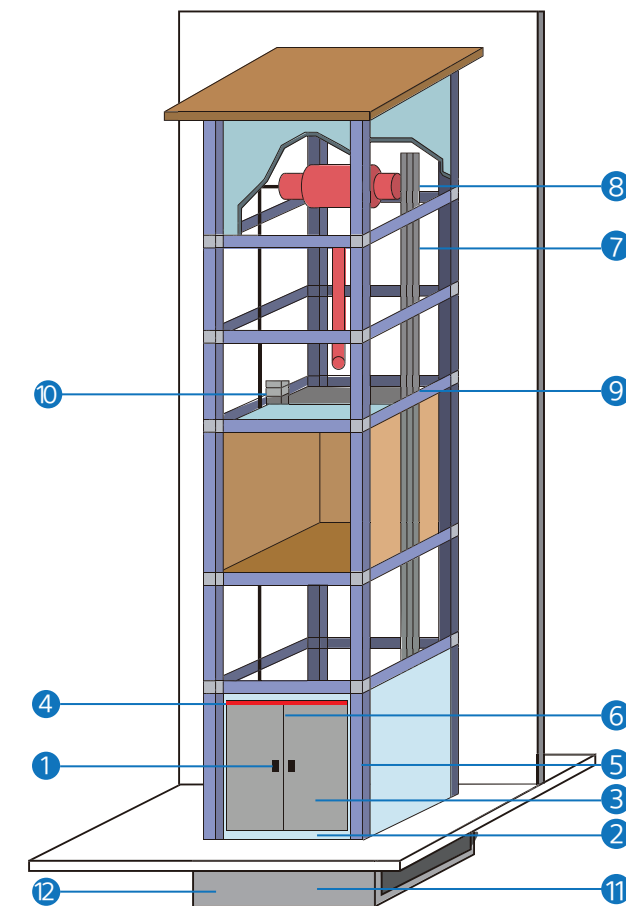
③ 표시내용 부착
(적재하중, 제조연월 등)



④ 경보장치



⑤ 전기장치 및 비상정지장치



⑥ 출입문 인터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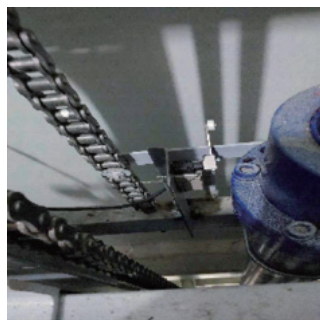
⑦ 권과방지장치



⑧ 과부하방지장치



⑨ 낙하방지장치



⑩ 로프(체인) 이완 감지 장치



⑪ 충격완화장치



⑫ 안전블록

☑️ 상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자세한 안전검사 기준은 아래 고시를 참고바랍니다.

- 유압식, 랙 및 피니언식 산업용 리프트 : 「안전검사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7호) [별표 3]

- 권동식, 원치식 일반작업용 리프트 : 「안전검사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16호) [별표 3]